

울산광역시중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5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4. 3. .

제 출 자 :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2014년도 참전명예수당(6·25 및 월남전 참전자) 시비보조금 인상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당초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국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을 고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조문 개정 : 월 3만원 → 월 5만원 (안 제4조제1호)

3. 근거법규

- 가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(참전명예수당)
-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0호 (적용대상 국가유공자)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예산담당 협의
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동의
- 라. 입법예고 : 2014. 1. 27. ~ 2014. 2. 17.(의견 없었음)

울산광역시중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월 3만원”을 “월 5만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원사업) (생략)	제4조(지원사업) (현행과 같음)
1.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지급	1. ----- 월5만원 ---
2. ~3. (생략)	2. ~3. (현행과 같음)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1054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제출연월일 : 2014. 03. 06.(목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 : 2014. 03. 10.(월)
- 위원회심사 : 2014. 03. 13.(목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복지경제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2014년도 참전명예수당(6.25 및 월남전 참전자) 시비보조금 인상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당초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국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을 고취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조문 개정 : 월 3만원 → 월 5만원
(안 제4조제1호)

4. 근거법령

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(참전명예수당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0호
(적용대상 국가유공자)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김석기)

○ 본 조례안은

참전 명예수당(6.25 및 월남전 참전자) 시비 보조금이 인상됨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금액을 당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 지급함으로써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국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을 고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
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